

변경대비표

1. 변경내용 :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정정 등

2. 변경적용일 : 2014년 8월 19일

3. 대비표
집합투자규약

구 분	현 행	변 경(안)
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<p>5. 신설</p> <p>6.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% 이하가 되도록 한다.</p> <p>7.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 이하로 한다. 다만, 법 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할 수 있다.</p> <p>7-1. 주식,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는 제1호의 주식투자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	<p>5. <u>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% 이하가 되도록 한다. 단,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는 위험회피 목적에 한한다.</u></p> <p>6.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% 이하가 되도록 한다. <u>단, 금리스왑거래는 위험회피 목적에 한한다.</u></p> <p>7.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 이하로 한다. 다만, 법 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할 수 있다.</p> <p>7-1. 주식, 주식 <u>및 채권</u>관련장내파생상품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는 제1호의 주식투자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
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	<p>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5호 내지 제9호, 제19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	<p>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5호 내지 <u>제10호</u>, 제19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

투자설명서

구 분	현 형	변 경(안)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<p>3. 증권신고서,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</p> <p>4.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</p>	<p>3. 증권신고서,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,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.</p> <p>4.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,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
제 2 부 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<p>가. 투자대상</p> <p>5.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·채권이나 주식·채권의 가격, 이자율, 지표,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- 신설 <p>- 신설</p> <p>6.금리스왑거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. -신설 <p>7-1. 주식,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는 제1호의 주식투자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.</p>	<p>가. 투자대상</p> <p>5.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·채권이나 주식·채권의 가격, 이자율, 지표,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- <u>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% 이하까지 투자</u> - <u>투자목적 : 위험회피 목적에 한함</u> <p>6.금리스왑거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. <p>-<u>투자목적 : 위험회피 목적에 한함</u></p> <p>7-1. 주식, 주식 <u>및 채권</u>관련장내파생상품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는 제1호의 주식투자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.</p>
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	(생략)	삭제